

요약본

2010 년 현장 개정 위원회는 Michael R. Bloomberg 시장이 2010 년 3 월에 임명했습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총장인 Dr. Matthew Goldstein 이 현장 개정 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 14 명의 다른 유명한 뉴욕 시민이 이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현장 개정 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은 뉴욕시의 5 개 자치구(borough)에서 5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중의 증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개정 위원회는 다음의 5 개 영역을 탐구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임기 제한, 투표 참여, 공공 신뢰, 정부 구조 및 토지 사용 등. 그 후 현장 개정 위원회는 5 개 논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발표 및 추가적인 대중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개정 위원회 위원은 차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에서 고려하기 위한 추천 사항이 포함된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각 자치구에서 최종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상기 추천 사항에 대한 대중의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8 월 11 일 회의를 열고 다음에 설명된 제안들에 대해 11 월 선거에서 투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임기 제한

2008 년에 현지 법규에 의해 개정되고 개정 위원회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현행 현장 조항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의 선출된 공무원은 만기 임기를 3 번까지 역임할 수 있습니다. 1993 년, 유권자 발의로 제정된 법률로 인해 선출된 공무원이 만기 임기를 2 번까지만 역임하도록 제한된 바 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유권자가 2 번 임기와 3 번

임기 중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투표자들이 원래의 2 번 임기 제한을 복원할 수 있는 개정 제안을 투표 용지에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개정 제안은 시의회 행동시 재직중인 선출 공무원의 임기 제한을 시의회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며, 제안된 2 번 임기 제한은 2010 년 11 월 2 일 이후에 처음으로 공직에 선출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독립 유세 기부금 공개 요건

근래에 와서, 점차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입후보자와 제후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독립적 자금 지출이 뉴욕시 선거 관련 지출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대중에게 이와 같은 지출액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확인된 시정부 직책 입후보자와 관련해 금전을 지출하거나 기부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광범한 공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자와 독립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지출액의 공개를 요구하도록 뉴욕시의 유명한 선거 자금 규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 제안은 정보의 공개에만 관련되며 입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기부금 및 지출액 제한을 설정하지 않음.) 이 개정 위원회 제안은 시정부 입후보자 또는 국민투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0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게 보고하도록 요구될 것이며 뉴욕시 선거 날짜 이전 12 개월 동안 특정 입후보자를 지원 또는 반대하기 위해 \$5,000 이상의 독립 경비를 지불하는 모든 단체가 그 단체에 기부한 모든 단체의 신원을 그리고 선거 날짜 이전 12 개월 동안 그 단체에 \$1,000 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모든 개인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고; 뉴욕시 공무원직 입후보자를 지원 또는 반대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가 \$1,000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광고 및 기타 의사소통 수단은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청원서에 필요한 서명 수의 감소

개정 위원회는 피선거권의 확장을 위해 뉴욕시 선거 입후보자가 감소된 청원서 서명자 수로 입후보자 명단에 오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시장, 감사관 및 공익대변인 선출 정당 예선에서 입후보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필수 서명자 수를 7,500 에서 3,750 으로 감소하고; 자치구장 (Borough President) 선출 정당

예선에서 입후보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필수 서명자 수를 4,000 에서 2,000 으로 감소하고; 시의원이 정당 예선에서 입후보자 명단에 오르거나 또는 독립 입후보자로써 본선 입후보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필수 서명자 수를 900 에서 450 으로 감소시킵니다.

유권자 지원 위원회의 유세 재정 위원회 내부 편입 재구성 및 유세 재정 위원회 위원의 임기 변경

개정 위원회는 현재 단독 운영 단체인 유권자 지원 위원회(VAC)를 유세 재정 위원회 (CFB)과 통합하여 회원 구성을 개조하고, 명칭을 "유권자 지원 자문 위원회(VAAC)"로 변경하고 두 단체의 일부 행정 기능 및 책임에 대한 재정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세 재정 위원회의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관리 체제를 통해 유권자 지원 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지원 위원회는 이미 유세 재정 위원회와 함께 투표자 안내서 및 투표자 안내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 하에서, 유세 재정 위원회는 유권자 지원 코디네이터를 선택할 것이며, 이 코디네이터 및 유권자 지원 자문 위원회의 자문과 보조를 통해 현재 현장에 있는 유권자 지원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개정 제안은 또한 유세 재정 위원회 회원들의 근무 개시 일자를 4 월 1 일에서 12 월 1 일로 앞당길 것입니다.

제 68 장의 개정, 이해 상충법

개정 위원회는 뉴욕시의 이해 상충법을 강화하기 위한 헌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위원회는 뉴욕시 이해상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증가하고, 시정부 공무원의 의무적 훈련을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훈련에 대해서 개정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뉴욕시 이해 상충법에 대해 임명 후 60 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제안합니다. 시정부 기관은 필수적으로 이해 상충 관리 위원회와의 상담을 통해 훈련 제공을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은 직접적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 개정 위원회는 단일 이해상충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000 에서 최대 \$25,000 로 증가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현행 벌금 명세표는 1988 년 이래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갱신되거나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또한 모든 이해 상충 위반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반환 요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 법정의 통합

행정적 위반에 대한 판결은 현재 12 개 이상의 별개의 법정에서 다양한 절차에 의해 그리고 다른 자격을 갖춘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개정 제안은 법정들에 대한 행정적 통합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을 간소화하고 절차적 표준을 설정합니다. 현재 많은 재판 청문회들이 규제 기관 조직 내에서 개최되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때때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2005 년 헌장 제안에서 기인되었으며 주 법정 판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반영하는 행정법 판사의 행동 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 제안은 시장에게 다양한 법정의 재판 기능을 단일 법정 또는 기관에 양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에게 통합에 관한 평가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에 행정법 판사의 임명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의 명령 및 지시가 유효하기 전에 통보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 제안은 소비자 보호국에 자체가 집행하는 법의 위반에 대해 공정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국의 재판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합니다. 현재 면허 단체들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소비자 보호법 위반은 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보고 요건 및 자문 기관들에 대한 검토

개정 위원회는 헌장, 행정 법전 및 기타 지역법에 확립된 175 개 이상의 보고서 및 자문 기관들이 현재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보고서 및 자문 기관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시장의 운영 부장이 회장을 담당하고 또한 시의회 의장 및 시의회 의장이 선택한 2 명의 다른 의원, 법률 자문관, 예산 관리국 국장 및 정보 기술 및 통신국 국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개정 제안은 또한 보고서 및 자문 기관 검토 위원회가 시의회 및 시장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 보고 요건 또는 자문 기관을 유지하며 전체나 일부를 포기하기로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와 같은 보고서 및 자문

기관에 의해 지배되거나 영향을 받는 단체들과 회사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규 입법 조치는 보고서 및 자문 기관 검토 위원회가 보고 요건 또는 자문 기관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 개정 제안은 또한 위원회가 새로운 보고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3 년의 대기 기간을 갖고 있으면 시의회가 보고 요건 또는 자문 기관을 철회, 제한, 연장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정 분배

뉴욕시의 공정 분배법은 지역사회내 시정부 시설의 부담 및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보다 투명한 "공정 분배" 결정을 위해 헌장의 204(d) 조항을 개정하여 도시계획국이 발행하는 지도 및 설명서가 필수적으로 공공 기관이나 그 대리 기관 또는 필적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교통 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장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래를 위한 고려 사항

개정 위원회는 투표에 회부하는 질문에 추가해서 선거법 개정, 공공 신뢰 및 정부 구조와 관련된 기타 문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더욱 연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뉴욕시 선거를 비정당 체제로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고려를 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또한 뉴욕시 전체 공무원직 정당 예선에서 즉각적인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으나 포괄적인 변화에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했으며, 주의회가 선거 당일 등록 및 조기 투표 또는 우편 투표에 대해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개정 위원회가 검토한 공공 신뢰의 문제는 이해 상충 관리 위원회의 구조 및 권한을 포함합니다. 정부 구조의 문제가 개정 위원회에 의해 상세히 논의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개정 위원회는 세력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공익대변인의 역할, 시의회의 관행, 로비스트들에 대한 규정, 자치구장의 권한 및 지역사회 위원회, 보장 예산, "세출 단위"의 범위 등

장래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 위원회는 토지 사용 절차를 장래에 개정하기로 했으며, 그 이유는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 의사 결정자들 사이의 세력 균형 변화와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개정 위원회는 장래의 개정 위원회 또는 시의회가 현장의 간소화 대책을 고려하도록 권장했습니다.